

취지를 반영하여 위법행위확인을 위한 감사실시 요건의 강화, 감사중복 금지 등 수감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법령위반행위 등을 확인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실시 요건을 강화함(법 제171조제2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와 수감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이 아니면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7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은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법률 제10345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부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갱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공공 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은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행정재산에 대한 기부자의 무상사용·수익 권한을 일정기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기부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기부채납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를 10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 맹형규

●법률 제10346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중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를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